

大田廣域市 한밭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案 番號	482
----------	-----

提出年月日：1994. 10.

提出者：大田直轄市長

1. 提案理由

- 가. 責任經營體制 確立과 事業推進의 專門性 圖謀를 위하여 現公營開發事業團에서 推進中인 宅地開發, 住宅建設, 賃貸住宅管理등의 事業을 '95. 1. 1.자로 한밭開發公社로 移管하는데 따른
- 나. 資本金增資, 事業目的등 事業 推進에 필요한 部分을 改正하고 上位法 改正으로 인한 未備한 部分을 改善 補完하고자 하는 것임

2. 主要骨子

- 가. 公營開發事業을 公社에서 推進하게 됨에 따라 設置目的과 事業業務를 追加하고 事業領域 擴大를 위하여 議會의 同意를 얻어 公社가 直接 다른 法人에 出資할 수 있도록함(第1條, 第19條)
- 나. 地方公企業法 改正에 따른 權限의 委任, 定款記載事項을 變更하고 準豫算 規定을 新設함 (第3條, 第8條, 第24條)
- 다. 宅地開發, 住宅建設등의 大規模 事業의 推進에 따라 業務가 圓滑히 運營될 수 있도록 公社의 授權資本金 規模를 擴大함. (第4條)
- 라. 出資하는 資本金에 대한 株式發行을 簡素化하고 株式發行總數를 授權資本金에 맞추어 變更함 (第5條)

- 마. 條例 內容中 重複記載된 事項을 削除하고 地方公企業法の 規定에 맞도록 調整함(第6條, 第36條, 第37條)
- 바. 地方公企業法 規定에 의한 損益金 處理 順序에 따라 公社運 營中 發生되는 利益金과 損失金의 處理順序를 調整하려는 것임 (第27條)
- 사. 公營開發事業의 持續적이고 원활한 事業 推進을 위하여 地 方公企業法에 規定된것과 같이 公務員을 公社에 派遣하여 業務支援을 할 수 있도록 함 (第40條의2)
- 아. '95. 1. 1字로 公營開發事業團에서 推進하던 宅地開發, 住宅 建設등의 業務가 公社로 移管됨에 따른 後續 措置를 規定함 (附則 第1條, 第2條)
- 자. 公營開發事業의 원활한 業務推進을 위하여 一定한 業務 範圍內 에서 市長의 公印을 備置 使用할 수 있도록 함 (附則 第3條)

3. 參考事項

- 가. 地方公企業法 第65條의2, 第67條, 第70條, 第75條, 第75條의2,
- 나. 地方公企業法施行令 第43條의2, 第50條, 第51條의2, 第58條
- 다. 商法 第437條
- 라. 大田直轄市公營開發事業團設置條例 附則 第2條

참 고 사 항

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2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년도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7조(손익금의 처리)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적립한 후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고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②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제70조(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 공사는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5조(상법의 준용) 공사중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의2(공무원의 파견·겸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3조의 2(정관기재사항) 법 제5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한 사항

제50조(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사업연도 개시 35일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그 잔액의 1/20이상을 자본금액의 1/2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며,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 사업준비등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58조(권한의 위임) ① 내무부장관은 법 제7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2조의 제2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공단의 지사 또는 출장소 설치에 관한 승인권

다. 상법

제437조(발행예정주식총수의 증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라. 대전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부칙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는 1994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

대전직할시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을 삭제하고 “함으로써 건설자재생산 및 주차장관리 청소 위생사업”을 “하여 택지및 주택의개발과 공급, 공공복지사업”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내무부장관(이하“장관”이라한다)을 “대전직할시장(이하“직할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200억원”을 “390억원”으로 하고 “수권자본금의 4분의 1이상으로 정한다”를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5조 제3항중 “1,000주권의 6중”을 “1,000주권, 10,000주권의 7중”으로 한다.

제5조 제5항중 “400만주”를 “780만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 제1항 제7호중 “조직” 다음에 “및 정원”을 삽입하고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기타 필요한 사항

동조 제2항중 “장관”을 “내무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2.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3. 도시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4.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5. 시장사업 및 유통업무 단지 조성사업
6. 도시개발 및 지역관련사업
7.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시멘트가공사업중 레미콘.아스콘 판매사업은 제외)
8. 도시환경 관련사업 및 청소위생사업(산업폐기물 포함)
9.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원재활용 관련사업

10. 주차장 사업
11. 하천개발 및 관련사업
12. 공원사업
13. 지하도겸 상가 조성사업
14. 도시가스사업
15. 궤도사업
16.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7.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20조 제3항중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수탁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다”로 한다

제21조 단서중 “다만,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 타 시·도지사등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직할 시외 다른 지역도 포함 할 수 있다”를 “다만,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4조중 “1개월”을 “35일”으로하고 제2항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년도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길때에는 이월 결손금을 보전한 후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의 적립
 2. 배당금
 3. 정관이 정하는바에 의한 적립금

4.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동조 제2항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
2. 이익준비금
3. 차기이월 결손금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7조 제2항중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 2(공무원의 파견)직할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분의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1항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과 제5조의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의무의승계) 공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대전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던 주택사업및 택지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관한 관리의무를 1995년1월1일부터 승계한다

제3조(직할시장의 공원비치)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직할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1. 시영주택의 소유권 이전,분양,계약관련업무
2. 국민주택건설 융자금에 대한 근저당말소 등기업무
3. 용지의 취득 및 공급 관련업무
4. 재산관리업무
5. 지적공부정리 신청

신 · 구 조문대조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이 조에는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한다)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한밭개발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설치함으로써 건설자재생산및 주차장관리, 청소위생사업 등 도시및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사무소)</p> <p>① (생략)</p> <p>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내무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u>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p> <p>제4조(자본금)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00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1이상으로 정한다.</p> <p>제5조(주식의발행등)</p> <p>① ~ ② (생략)</p> <p>③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6종으로 발행한다.</p> <p>④ (생략)</p> <p>⑤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만주로 한다.</p>	<p>제1조(목적)이 조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한다) ----- 하여 택</p> <p>----- 지및 주력의 개발과 공급, 공공 복리 사업</p> <p>-----</p> <p>-----</p> <p>제3조(사무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대전직할시장(이하“직할시장” 이라 한다) -----</p> <p>-----</p> <p>제4조(자본금)① ----- 390</p> <p>----- 억원 ----- 은 공사의</p> <p>----- 정관으로 정한다.</p> <p>제5조(주식의발행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 1,000주권, 10,000주권의 7종으로</p> <p>----- 발행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780만주</p> <p>-----</p>		

현행	개정안
<p>제6조(주식에대한 배당) 공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익을 배당한다.</p>	<p>제6조 (삭 제)</p>
<p>제8조(정관)① 공사의 정관에서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지 6. (생략) 7. 조직에 관한사항 8. 내지 16. (생략) <p>(신 설)</p> <p>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거쳐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장은 장관에게 인가 신청하기전에 대전직할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8조(정관)①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지 6. (현행과 같음) 7. 조직및 정원에 관한사항 8. 내지 16. (현행과 같음) 17. 기타 필요한 사항 <p>② -----</p> <p>----- 내무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 -----</p>
<p>제19조 (사업업무)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자재생산및 판매 (세멘트가공사업 레미콘, 아스콘은제외) 2. 주차장관리 사업 3. 청소위생사업(산업폐기물포함) 4. 도시개발및 지역관련 사업 5. 하천관련 사업 6. 공원사업 7. 지하도검 상가조성 사업 8. 도시가스 사업 9. 궤도사업 	<p>제19조(사업업무)①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 일반건축물의취득, 개발, 분양, 임대및 관리사업 2. 토지의취득, 개발, 분양, 임대및관리사업 3. 도시 재개발 사업및 주거환경개선사업 4.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5. 시장사업및 유통업무단지 조성사업 6. 도시개발및 지역관련 사업 7. 건설자재생산및 판매 (세멘트가공사업 중 레미콘, 아스콘 판매사업은 제외) 8. 도시환경관련사업 및 청소위생사업

현 행	개 정 안
<p>10.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p> <p>(신설)</p> <p>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1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직할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 타시·도지사 등에 사업을 위탁하는</p>	<p>(산업폐기물 포함)</p> <p>9. 광역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원 재활용 관련사업</p> <p>10. 주차장 사업</p> <p>11. 하천개발 및 관련사업</p> <p>12. 공원사업</p> <p>13. 지하도경 상가조성사업</p> <p>14. 도시가스 사업</p> <p>15. 궤도사업</p> <p>16.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p> <p>17.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p> <p>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p> <p>제20조(사업의 대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수탁자의 상호협의에 의한다.</p> <p>제21조(사업구역) ----- ----- 다만,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u>경우 직할시외 다른 지역도 포함 할 수 있다.</u></p> <p>제24조(사업계획및예산)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및 수지계산서를 영제50조의 규정에의거 작성하여 당해사업년도 개시1개월전에 직할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서또는 수지계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p> <p>(신설)</p> <p>(신설)</p>	<p>제24조(사업계획및예산)① ----- ----- ----- <u>35일전에</u> ----- -----</p> <p>②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것으로 본다.</p>
<p>제27조(손익금의처리)①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길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이월결손금의 보전</u> 2. <u>법정준비금의 적립</u> 3. <u>주주에대한 이익배당</u> 4. <u>임의적립금의 적립</u> <p>② 공사의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길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업준비금 보전</u> 2. <u>차기이월 결손금</u> 	<p>제27조(손익금의처리)① ----- ----- 이익이 생길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다음 각호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이익준비금의 적립</u> 2. <u>배당금</u> 3. <u>정관이 정하는바에 의한 적립금</u> 4. <u>차기이월이익잉여금</u> <p>②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u> 2. <u>이익준비금</u> 3. <u>차기이월결손금</u>

현행	개정안
<p><u>제36조(급여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u></p> <p>공사는 그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직할시장은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u>제37조(감독) ①(생략)</u></p> <p>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구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 <p>③ 제2항 제2호의 규정된사항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직할시장이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u>(신설)</u></p>	<p><u>(삭제)</u></p> <p><u>제37조(감독) ①(현행과 같음)</u></p> <p>②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구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 직원의 급여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 <p><u>제40조의2(공무원의파견) 직할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제1조 (시행일) 이 조에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1항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과 제5조의 주식의 발행 등에 관한사항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1994년12월31일까지 대전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던 주택사업 및 택지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1995년 1월1일부터 승계한다.</p> <p>제3조 (직할시장의 공인비치)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u>시영주택의 소유권이전, 분양 계약 관련 업무</u>2. <u>국민주택건설 용자금에 대한 근거당 말소 동기업무</u>3. <u>용지의취득및 공급 관련업무</u>4. <u>재산관리업무</u>5. <u>지적공부정리 신청</u>

大田廣域市 한밭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1995年2月 20日
內 務 委 員 會

I. 審 查 經 過

1.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4年 10月 29日 大田廣域市長
2. 回附日字 : 1994年 10月 31日
3. 上程日字 : 제3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1995. 2. 20)
상정, 심의, 원안가결

II. 提案說明要旨 (提案說明者 : 企劃管理室長)

1. 提案理由

- 가. 責任經營體制確立과 事業推進의 專門性 圖謀를 위하여 現 公營開發事業團에서 推進中인 宅地開發, 住宅建設, 賃貸住宅管理 등의 事業을 '95. 7. 1자로 한밭開發公社로 移管하는데 따른
- 나. 資本金增資, 事業目的등 事業推進에 必要한 部分을 改正하고 上位法 改正으로 인한 일부 未備한 部分을 改善 補完하고자 하는 것임.

2. 主要骨子

- 가. 公營開發事業을 公社에서 推進하게 됨에 따라 設置目的과 事業業務를 追加하고 事業領域 擴大를 위하여 議會의 同義를 얻어 公社가 直接 다른 法人에 出資할수 있도록 함. (第1條, 第19條)
- 나. 地方公企業法 改正에 따른 權限의 委任, 定款記載事項을 變更하고 準豫算 規定을 新設함. (第3條, 第8條, 第24條)
- 다. 宅地開發, 住宅建設등의 大規模 事業의 推進에 따라 業務가 圓滑히 運營될 수 있도록 公社의 授權資本金 規模를 擴大함. (第4條)
- 라. 出資하는 資本金에 대한 株式發行을 簡素化하고 株式發行總數를 授權資本金에 맞추어 變更함. (第5條)
- 마. 條例 內容中 重複記載된 事項을 削除하고 地方公企業法の 規定에 맞도록 調整함. (第6條, 第36條, 第37條)
- 바. 地方公企業法 規定에 의한 損益金 處理順序에 따라 公社運營中發生되는 利益金과 損失金의 處理順序를 調整하려는 것임. (第27條)
- 사. 公營開發事業의 持續적이고 원활한 事業推進을 위하여 地方公企業法에 規定된 것과 같이 公務員을 公社에 派遣하여 業務支援을 할 수 있도록 함. (第40條의 2)

아. '95. 7. 1자로 公營開發事業團에서 推進하던 宅地開發, 住宅建設등의 業務가 公社로 移管됨에 따른 後續 措置를 規定함. (附則 第1條, 第2條)

자. 公營開發事業의 원활한 業務推進을 위하여 一定한 業務範圍內에서 市長의 公印을 備置 使用할 수 있도록 함. (附則 第3條)

Ⅲ. 專門委員 檢討要旨 (專門委員 : 鄭鎮喆)

本 案件은 지난 89. 3. 24 設置된 大田廣域市 公營開發事業團에서 推進하던 事業一部를 地方公社인 한밭개발공사로 移管하려는 內容으로써, 95. 7. 1日字 諸般業務의 移管을 計劃하고 이에 따른 資本金 增資와 사업수행에 必要한 關係規定을 改正하려는 것임.

主要改正內容을 말씀드리면

- 첫째, 한밭개발공사의 事業業務에 公營開發事業을 包含하여 現在 10個 事業에서 17個 事業으로 늘리는 것이며, 事業의 擴大施行을 위하여 議會의 同의를 얻어 다른 法人에 資本金을 出資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둘째, 地方公企業法 第65條의2와 同法施行令 第50條 및 第58條의 改正에 따라서 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의 승인권을 內務部長官에서 市長으로 調整하였으며, 市長에게 提出하는 事業計劃書등의 提出時限을 事業年度開始 1개월전에서 35일전으로 하였고, 豫算의 未確定에 對備하여 前年度 준예산 制度를 新設하였음.

- 셋째, 공사의 수권자본금 規模를 現行 200億원에서 390億원으로 190億원을 增額하였음.

본 수권자본금 390億원은 商法 第437條의 規定에 따라 現 發行株式의 4배를 超過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現在 한밭개발 공사의 납입자본금 總規模 98億원을 기초로 하여 增額한 것임.

- 넷째, 공사가 發行하는 주권의 種類를 現行 6종에서 10,000주권을 追加하여 7종으로 하였으며, 株式發行 總數도 수권자본금 190億원의 增額에 따라 現 400만주에서 780만주로 하였음.

- 다섯째, 손익금처리에 있어서 地方公企業法 施行令 第51條의 2의 規定에 따라 그 處理順序를 移越缺損金 보전과 利益準備金 積立, 配當金 순으로 調整하였음.

그리고 본 공사의 運營管理와 關聯하여 地方公企業法 第75條의 2의 規定에 의거 필요시 公社定員의 10분의 1의 範圍안에서 公務員을 派遣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상 살펴보았듯이 개정안중 일부는 관련 地方公企業法의 改正에 따라 그內容을 정비하는 것이라 하겠음.

그러나 根本的인 目的은 現 公營개발사업단의 業務一部를 한밭개발공사로 移管하는 內容이라고 봄.

이번 公營開發事業의 公事 전환 計劃을 分析해 보면 物량면서 現在 우리市의 長期的인 開發與件을 고려할 때 宅地開發이나 住宅建設등 앞으로 公營開發事業의 대상물량은 최소한 2000년 이후까지도 確保가 可能하다고 보겠음.

그러나 公營開發事業團은 지난 89年 3月 24日字로 發足되어 그동안 법동의 3개 地域의 宅地開發事業과 住宅建設事業, 3工團造成

事業등을 推進한바 있고, 현재 원내 및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과 大田第4工團 造成事業을 推進中에 있습니다마는 財政面에서 볼 때

는 그동안 時期的인 景氣沈滯등의 악재 작용으로 宅地 및 住宅이 원활히 供給되지 못하였고 이러한 반사작용으로 인하여 資源確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한밭개발공사는 지난 92年 7月 10日字로 수권자본금 200億원 規模와 設立資本金 60億원으로 출발하여 現在 駐車場管理事業

과 쓰레기매립장 造成事業, 清掃事業등을 推進하고 있으나, 時期的인 경험부족과 對象事業의 한계성 및 재정약화로 인하여 地方公企業으로써의 收益事業 發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實情임.

따라서 이러한 양면성을 놓고 볼 때 相互業務機能이 유사한 공사와 公企業의 今番 統合體制 方案은 長期的으로 지방공사의 一元化나 經營體制의 合理化 側面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겠음.

本 案件은 當初 公營開發事業團 設置가 今年末로 終了되는 시점을 勘案하여 95年 1月 1日부터 公營開發事業을 公사화로 轉換하려

했던 것인데, 現在 宅地開發 및 工團造成등 大規模 事業이 한창 進行중으로써 事業移管에 따른 계속성 維持의 어려움과 時期的인

축박함을 判斷하여 公營開發團 設置를 事業 마무리 단계인 95年 6月 30日까지 6個月을 더 延長한바 있음.

이에 따라 지난해 12月 10日에 公營開發事業의 權利義務 승계 기간을 95年 1月 1日에서 95年 7月 1日로 變更하는 修正案이 提出되었던 것임.

다만, 공사 전환의 時期的인 問題點 등으로 그 設置期間이 6個月 더 延長되었는데 이미 計劃한대로 公營開發事業이 95年 7月 1日

부터 本格的인 공사체제로 轉換된다면 現在 公營開發事業團 人力 구조의 特殊性(기술직 : 전체 49명중 21명)이나 事業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必要한 專門人力의 確保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특히 資本金 전환에 따른 재산평가 문제와 借入金 전환에

따른 關聯機關과의 상호협의등 제반 실무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IV. 質疑 및 答辯要旨

質疑要旨	答辯要旨
○ 한밭개발공사 명칭 변경 의견은	○ 공사명이 현재 시민에게 널리 알려져있고, 공사의 추진사업 또한 성숙단계에 있어서 명칭 변경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연구 검토하겠음.
○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은	○ 사업규모나 추진상태를 전망 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음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p>○ 인력에 있어서 본청소속의 기능직이 공사를 희망할 경우 수용할 수 있는지</p>	<p>○ 공사의 도움인력이면 수용 하겠음.</p>
<p>○ 기술적인 면에서 공영개발 사업 인수시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p>	<p>○ 공영개발사업의 기술축적을 위해 일정기간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현재로써는 기본적인 기술축적이 있기 때문에 별문제 없음.</p>
<p>○ 공사화 기획단의 그동안 추진 상황은</p>	<p>○ 공사와 공영개발사업단과의 합동으로 기획단을 구성하고 상호협의하에 현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음.</p>
<p>○ 공영개발사업단 의견은</p>	<p>○ 현재 정규직 49명과 일용직 12명으로써 아직까지는 특별한 동요없이 진행사업 마무리에 임하고 있음.</p>

V. 審 查 結 果 : 原 案 可 決